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lass A1 - 78500, Class C1 - 78496, Class Ce - 78498, Class Ci - 93264, Class Cw - 93265)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c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0년 1월 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1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lass)	Class A1	Class C1	Class Ce	Class Ci	Class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8500	78496	78498	93264	9326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규모 및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도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매회사 영업일에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c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lass)	Class A1	Class C1	Class Ce	Class Ci	Class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8500	78496	78498	93264	9326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시	주요내용
2008. 2. 11	최초설정
2009. 5. 2	적용 법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NH-CA 러-브 주식투자신탁”에서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 [주식]”으로 명칭 변경
2009. 7. 17	자산운용부문 조직개편에 따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이란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의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1)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농협문화복지재단 빌딩 02-368-3600 (www.nh-ca.com)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자문회사

해당지역 투자에 오랜 경험과 Know-how 를 축적한 세계적인 운용사인 아문디 (Amundi)을 해외자문회사로 하여 글로벌 리서치 및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해외자문회사 개요

회사명	아문디 (Amundi) 설립년도: 1950 년
주소 및 연락처	90, boulevard Pasteur, 75015 Paris, France Tel : + 33 (0)1 43 23 30 30
관련 업무	외화자산운용 관련 자문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2010 년 1 월 해외자문회사의 사명이 CAAM Paris 에서 Amundi 로 변경되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09 년 7 월 17 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필립페르슈롱	1962	AI&해외투자 본부장	63 개	약 1 조 8 천억좌	- 크레디아그리콜자산운용(CAAM) 클라이언트서비스 및 유로채권담당이사 (2004~2005) - 크레디아그리콜앵도수에즈슈브르 운용 채권운용담당 상무, 혼합포트폴리오 매니저 (1992~2004) - OFIVALMO 유럽 및 프랑스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1988~1992)
김 현	1974	해외주식팀 운용역	3 개	약 5 백억좌	- 마이에셋자산운용 (2001~2007) 채권운용 - KGI 증권 (2000~2001) 금융공학본부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 Citi 글로벌 증권 (1999~2000) 주식영업본부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입니다.

주 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책임)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운용부서	책임운용역	운용부서	책임운용역
2009. 7. 17	주식운용본부	김영준 양해만	AI&해외투자본부	필립페르슈롱 김 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2)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Class A1 (펀드코드: 78500)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0.97% (1.897%)
Class C1 (펀드코드: 78496)	제한없음	해당사항없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1.97% (2.897%)
Class Ce (펀드코드: 78498)	인터넷 전용	해당사항없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1.67% (2.597%)
Class Ci (펀드코드: 93264)	주 1) 참조	해당사항없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0.05% (0.977%)
Class Cw (펀드코드: 93265)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해당사항없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0% (0.927%)

주1)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종류별 집합투자증권(Class) 분류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사항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종류 A (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2. 종류 B (Class B) :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3. 종류 C (Class C) :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4. 종류 D (Class D) :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일반적인 분류기준과 상이하게 자체적으로 종류를 분류할 수 있으며, 상기의 모든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을 반드시 발행할 필요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상기의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종류 A, 종류 C)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종류 A : Class A1

종류 C : Class C1, Class Ce, Class Ci, Class Cw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러시아와 브라질에 상장된 지분증권, 이를 기초로 러시아와 브라질 외 국가에 상장된 DR 및 러시아와 브라질에 본사를 둔 기업이 발행하여 해외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여 관련 지분증권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획득추구 및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외국지분증권을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외국 지분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외국지분증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지분증권 (외국지분증권 포함)	60% 이상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관련된 법제 4 조제 2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외국지분증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②채권 (외국채권 포함)	40% 이하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외국채권: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단, 위에서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채권의 경우 2 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어음 (외국어음 포함)	40% 이하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 외국어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④자산유동화증권 (외국자산유동화증권 포함)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외국자산유동화증권: 외국정부 또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⑤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총자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헷지 및 투자목적> -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헷지 및 투자목적> -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 - 통화관련장의파생상품: 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 등 <p style="color: blue; margin-left: 20px;">※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장의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만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p> <p style="color: black; margin-left: 20px;">※해외 장내·장의 파생상품: 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개설되거나 그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장,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장(이하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거나 또는 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및 채권등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목적></p>
⑥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⑦증권의 대여 및 차입		대여의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차입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⑧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u>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u>
⑩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⑤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 파생결합증권

(3)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4)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거래

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 (1) 집합투자업자(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자산을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제 5 호가목(2)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제 5 호가목(1),(2),(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지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제 80 조제 10 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기타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범위에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7.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1) 법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법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8.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9.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나.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6. 기타”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나. “2. 동일종목 투자제한” 및 “4. 파생상품 거래. 나, 다, 라” 및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 나”의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 월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러시아와 브라질에 상장된 지분증권, 이를 기초로 러시아와 브라질 외 국가에 상장된 DR 및 러시아와 브라질에 본사를 둔 기업이 발행하여 해외에 상장된 외국지분증권 등”에 투자하여 관련 지분증권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획득추구 및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단,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당 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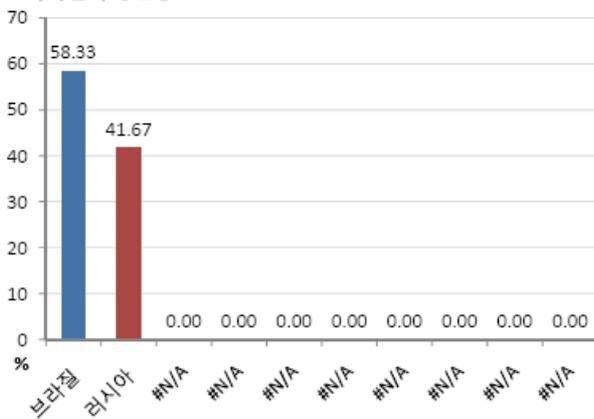
◆ 기본투자전략

- 신탁재산을 주로 “러시아와 브라질에 상장된 지분증권, 이를 기초로 러시아와 브라질 외 국가에 상장된 DR 및 러시아와 브라질에 본사를 둔 기업이 발행하여 해외에 상장된 외국지분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는 Amundi 를 해외자산운용의 자문회사로 하여 글로벌 리서치 및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양 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분석하고, 섹터분석, 국가경제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USD 자산에 대해 전략적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USD 표시자산의 30~80%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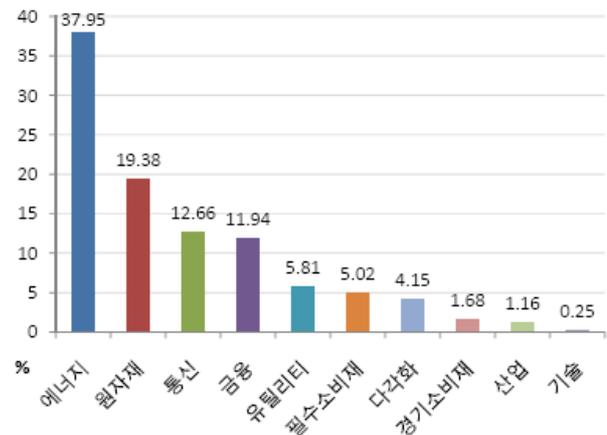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Top-down approach :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별, 섹터(산업)별 투자가치를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합니다. 국가 및 섹터별로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Bottom-up approach : 개별 기업의 성장성, 내재가치, 수익성 등의 재무분석을 기초로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 기업의 내재가치란, 기업의 매출,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상태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가치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 2009 년 2 월말 현재,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증시와 러시아증시에 각각 58% 와 42%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별로도 시장대비 원자재 및 에너지, 금융 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통신, 소비재, 의료건강 산업 등의 비중을 높여 경기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해외자산 투자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 상장된 DR(증권예탁증권)로 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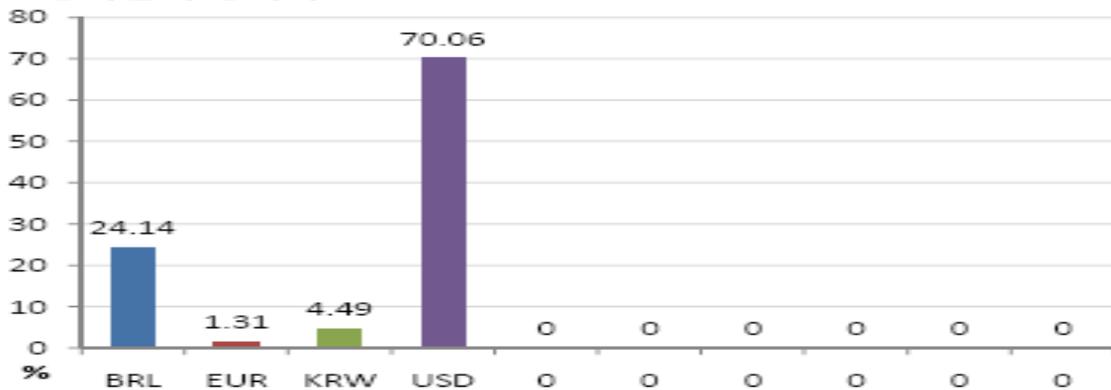
■ 국가별 구성현황



■ 섹터별 구성현황



■ 통화별 구성내역



◆ 종목선정전략

- 개별 국가의 투자기업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

- 개별 국가의 기업별 Fundamental(내재가치) 분석을 통한 저평가 종목 선정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종목 선정
예) 기업의 부채, 시장지배력, 이익성장률 등을 분석

(2)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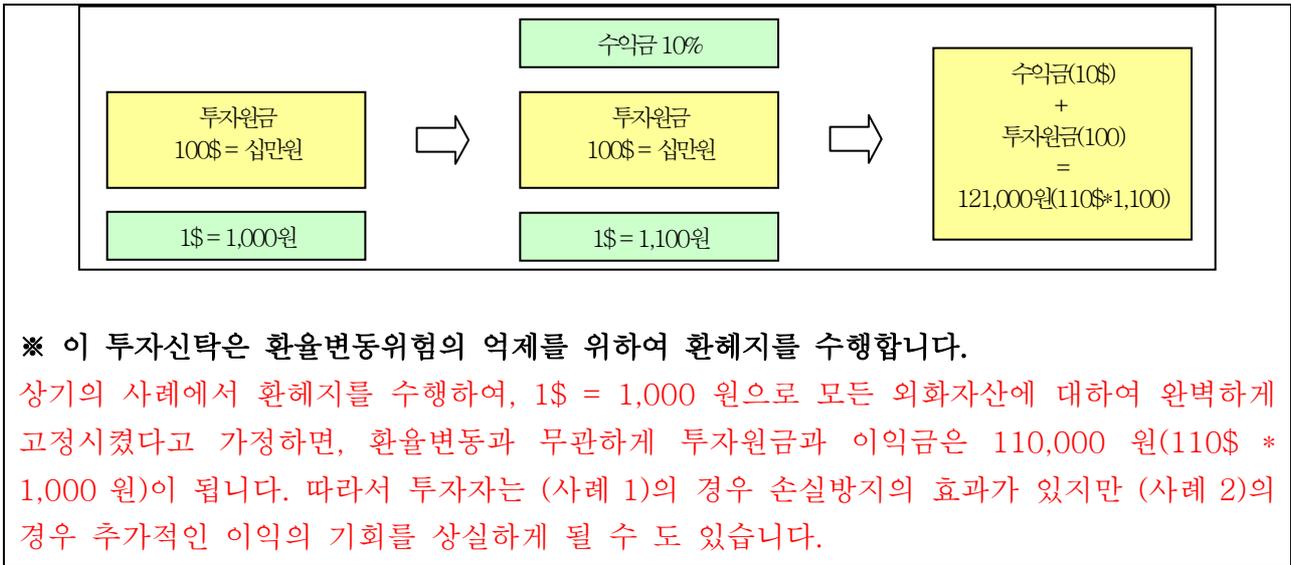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변화를 예측하여 시장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분증권(주권 등)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의 강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높은 지분증권(주권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증권시장의 약세가 예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은 지분증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의 특성상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외화표시자산 중 USD 표시 자산에 대한 전략적 환헤지를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목표환헤지 비율은 USD 자산의 30~80%수준입니다.)
- 2009년 3월 현재, USD 환율은 1391원이며, 1년 통화선도계약 환율은 1368원으로 23원(2%) 할인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헤지비용은 계약시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추가 손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투자자 A씨는 현금 100,000원을 1\$ = 1000원의 환율로 환전, \$100를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 1년뒤 환율이 떨어져 1 \$=900원이 된 경우 수익률이 10%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원금이 손실



[사례 2] 투자자 A씨는 현금 100,000원을 1\$ = 1,000원의 환율로 환전, \$100를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 1년뒤 환율이 상승하여 1\$=1,100원이 된 경우 수익률이 10%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환율상승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음



※ 환헤지 전략의 수행은 환헤지 관련 비용을 수반하며 상기와 같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한다고 하여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된 투자대상 지역 관련 자료 (2009년 3월 기준)

가. 인문지리사항

국가명	인구(백만명)	면적	수도	언어	화폐
러시아	139	1707 만 km ² (한반도 77 배)	모스크바	러시아어	루블
브라질	196	851 만 km ² (한반도 37 배)	브라질리아	포르투갈어	헤알

나. 거시경제현황 [2009년 3월 기준, 출처: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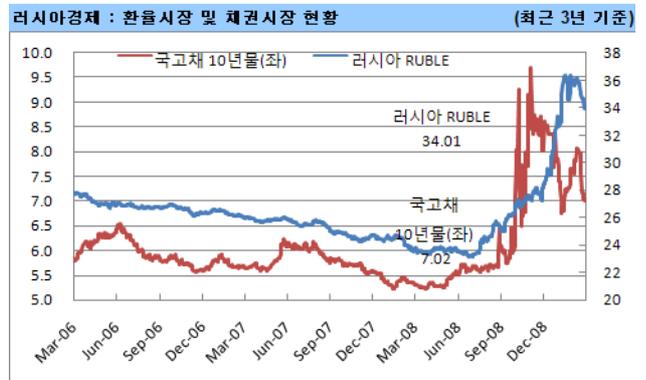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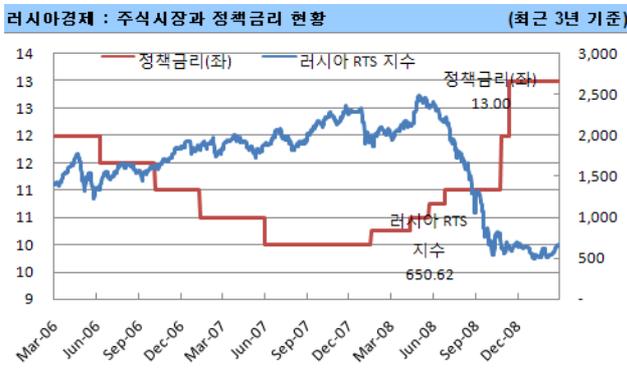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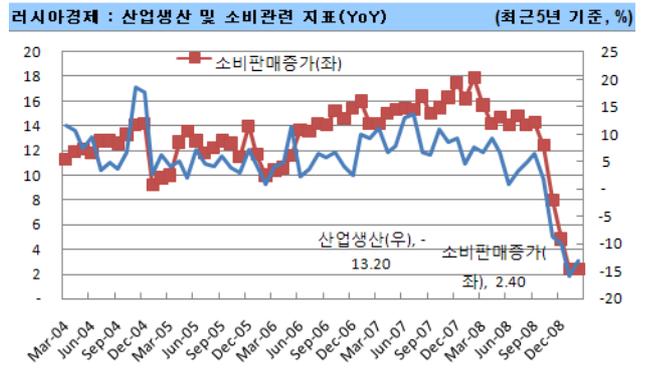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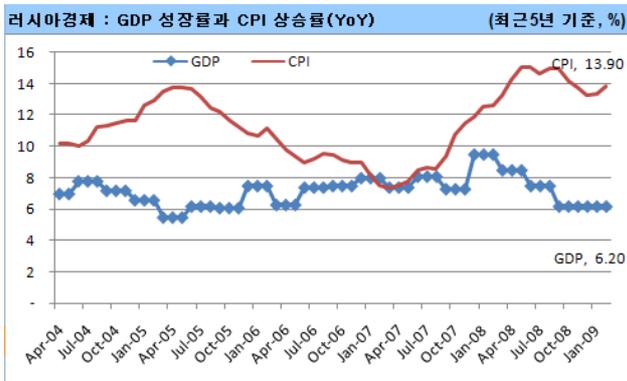
국가	GDP (10억 USD)	GDP (조원)	1인당 GDP (USD)	GDP Growth %	CPI %	실업률 (%)	인구 (백만명)	정책 금리	국고 10년 %	외환 보유 (백만 USD)	시가 총액 (십억 USD)	전세계 대비 비중 %	거래 대금 (백만 USD)	GDP 대비 비중% (연말기준)
러시아	1,291	1,799	14,743	6.20	13.90	8.10	139	13.00	7.02	371,439	246	0.87	6	77.17
브라질	1,314	1,831	9,570	1.27	5.90	8.20	196	11.25	#N/A N/A	200,486	640	2.27	1,522	106.43

[러시아 경제]

- 러시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및 루블화 가치 급락 등으로 경기하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에너지 관련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러시아 외환 보유고는 외채상환 및 자국 통화인 루블화의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3조 71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13.9%으로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재의 가격상승에 따라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러시아 정부는 내수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인하 등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러시아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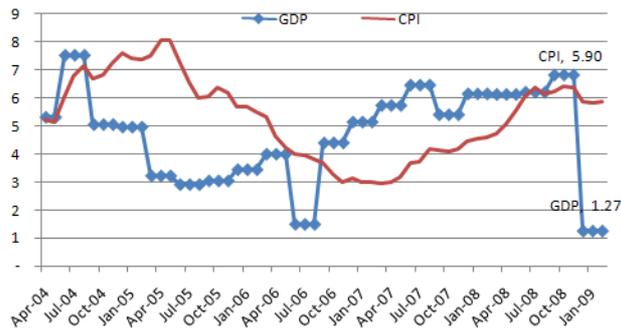


[브라질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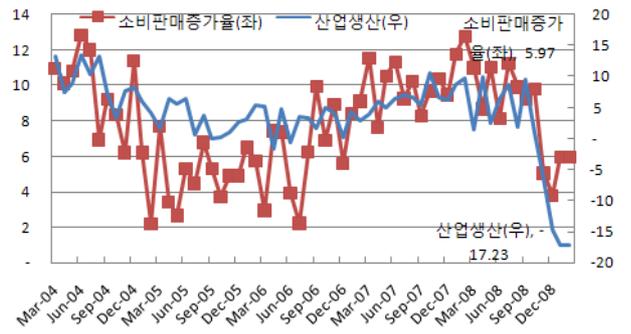
- 브라질경제의 경우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인해 경기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원자재 수출과 함께 브라질의 경제성장의 두 축이었던 내수경제의 경우에도 실업률의 증가, 소비판매의 하락 등으로 브라질 경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브라질 정부는 내수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인하 등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라질 경제지표]

브라질경제 : GDP 성장률과 CPI 상승률(YoY) (최근5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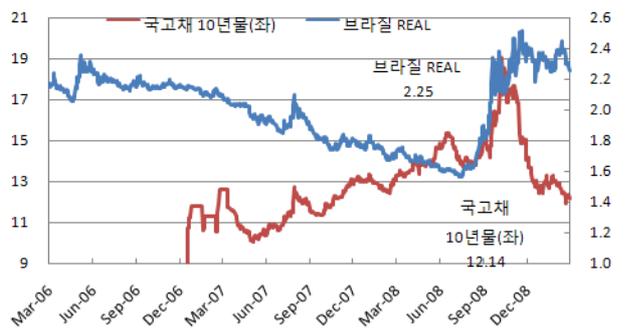
브라질경제 : 산업생산 및 소비관련 지표(YoY) (최근5년 기준, %)



브라질경제 : 주식시장과 정책금리 현황 (최근 3년 기준)



브라질경제 : 환율시장 및 채권시장 현황 (최근 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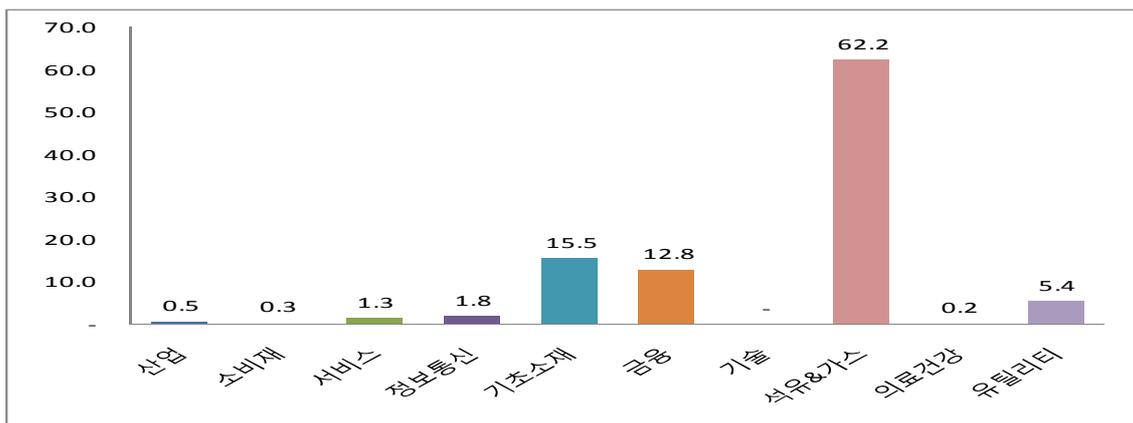


다. 주식시장현황 [2009년 3월 기준, 출처: Bloomberg]

[러시아 증시]

- 러시아 증시는 에너지 관련 산업의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에 비교적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 러시아의 주요기업들은 러시아 증시에서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도 동시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로서 달러화로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증시는 RTS 달러 증시를 별도로 두어 달러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RTS 증시 기준으로 구성종목은 50 여 종목이며, 주가수익비율(PER)은 3.63 배, 배당수익률은 3.99%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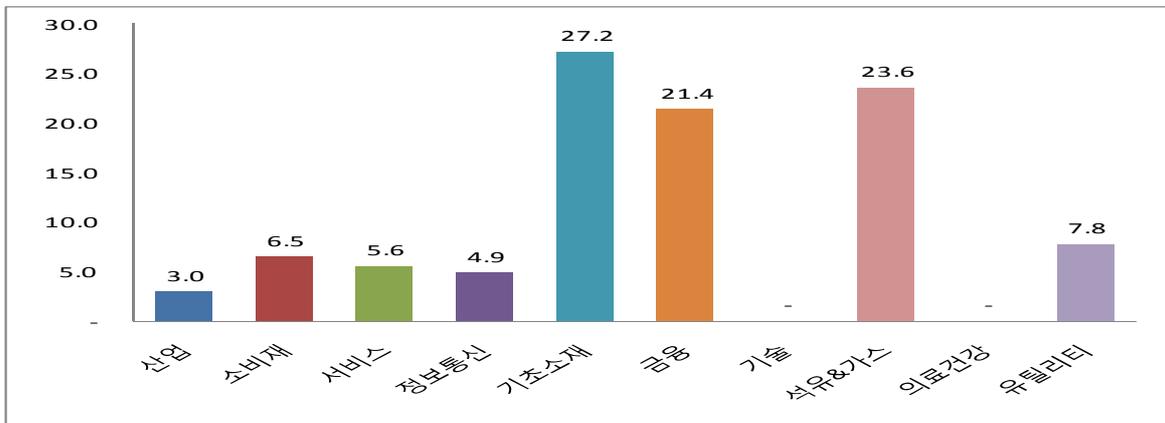
- 러시아 증권시장 업종별 비중 현황 -



[브라질 증시]

- 브라질의 대표적인 증시는 보베스파(BOVESPA) 증시이며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산업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 보베스파 증시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대표적인 증시로서 시가총액은 6400 억 달러 수준이며, 66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베스파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7 배, 배당수익률은 4.3% 수준이고, 브라질의 대표적인 에너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로서 유럽 및 미국증시에 함께 상장되어 있어 달러화나 유로화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 브라질 증권시장 업종별 비중 현황 -



(4)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RUSSIA 10/40 Index × 45%] + [MSCI BRAZIL index × 45%] + [Call rate × 10%]

MSCI RUSSIA 10/40 Index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발표하는 인덱스 중의 하나로, 러시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가중치를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물량(유동주식)만을 고려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10/40이란, 인덱스 내의 단일종목에 대한 투자를 10%이하로 제한하고, 인덱스에서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을 모두 합한 투자비중을 총 40%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Index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MSCI BRAZIL index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발표하는 인덱스 중의 하나로, 브라질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가중치를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물량(유동주식)만을 고려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여 정해졌습니다.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6)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 국내외 지분증권(주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 투자기구로서 국내외 지분증권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국내외 지분증권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국내외 지분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의 폭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특성 상,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나, 이러한 환헤지 전략의 수행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연관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외 지분증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증권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업종의 환경 변화 등 기타 국제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국내외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해외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통화와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달리 운영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개장과 폐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위한 환율의 적용에 있어서 제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참조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사무의 처리의 복잡성, 현금 운용의 복잡성 등 해외 투자의 경우 일반 운영위험은 일반 국내 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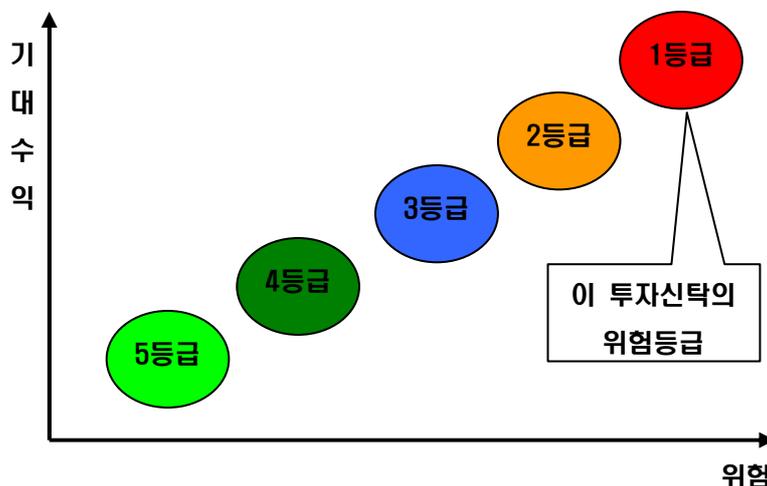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증권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기타)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기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 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에 의하여 수익자의 환매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외국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혼합형 투자신탁 등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 및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 위험에 따르는 손실 가능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하단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증권편입비율이 약관상 최저 60%이상인 증권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증권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증권편입비율이 약관상 최대 50%이상인 증권집합투자기구 * 인덱스(주가지수) 추종형 증권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증권집합투자기구 * 채권형 및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증권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증권편입비율이 약관상 최대 50%미만인 증권집합투자기구 * 약관상 BBB-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증권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관상 A-등급 이상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

주1) 구조화된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분류에 있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등)은 감안하지 않음. 따라서, 상기 표의 “2등급, 높은위험”으로 분류된 “수익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부도 등 신용위험 발생시 원금전액손실이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2) 투자위험등급분류는 NH-CA자산운용의 자체 기준입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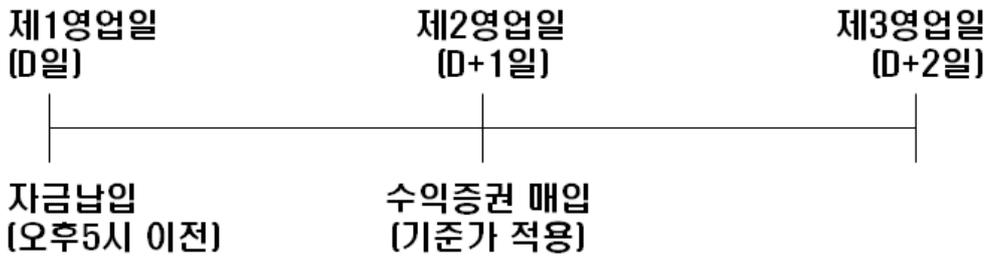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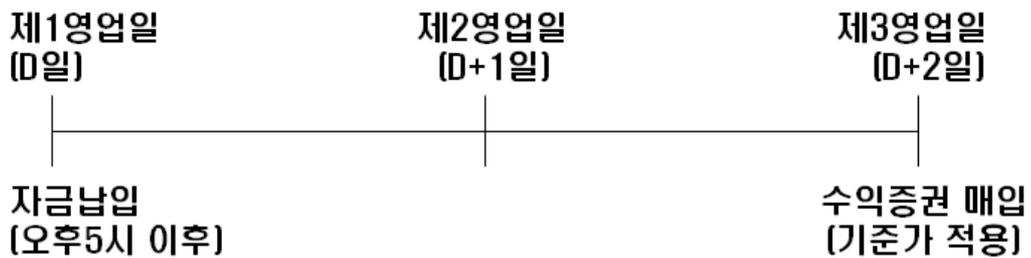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의 다음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제 3 영업일(D+ 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3) 종류별 모집제한

종류별	펀드코드	가입자격
Class A1	78500	제한없음
Class C1	78496	제한없음
Class Ce	78498	인터넷 전용
Class Ci	93264	주 1) 참조
Class Cw	93265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주1)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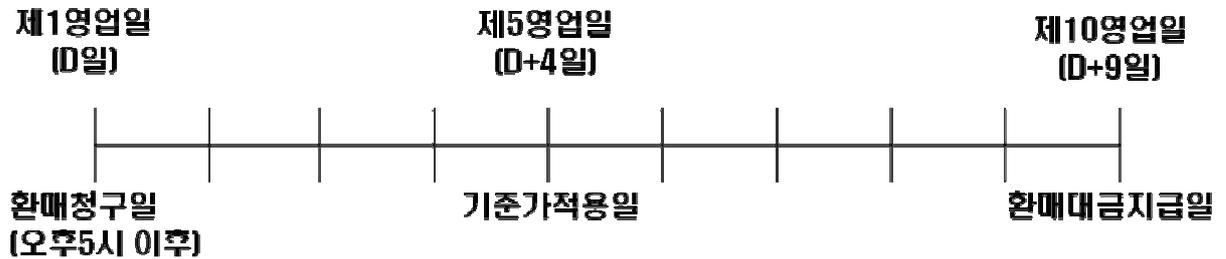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D+9)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 Class A1 :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 Class C1, Ce, Ci, Cw :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주 1) 단, 재투자과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 전(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가.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집합투자업자(www.nh-ca.com) 및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펀드간 판매보수가 차등 적용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간에 기준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채무증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p>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1	Class C1	Class Ce	Class Ci	Class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Class A1	Class C1	Class Ce	Class Ci	Class Cw	
집합투자업자보수	0.85%					매 3 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판매회사보수	0.97%	1.97%	1.67%	0.05%	0%	
신탁업자보수	0.0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7%					
기타비용	0.0448%	0.0508%	0.0632%	0.0529%	0.0529%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418%	2.9478%	2.6602%	1.0299%	0.9799%	-
합성 총보수·비용	2.9055%	3.9030%	3.5829%	1.9771%	1.9271%	-
증권 거래비용	0.3327%	0.4015%	0.3244%	0.3529%	0.3529%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8.02.11 ~ 2009.02.10]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8.02.11 ~ 2009.02.10]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신고서의 작성 시점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lass)의 비용(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등)의 경우 설정된 종류(Class)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종류(Class)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Class A1	395	996	1,623	3,303
Class C1	400	1,212	2,041	4,185
Class Ce	367	1,116	1,886	3,900
Class Ci	203	626	1,075	2,320
Class Cw	198	611	1,049	2,267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2) ClassC1 과 ClassA1 을 기준으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이 되는 시점이나, class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3) 신고서의 작성 시점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투자신탁 종류(Class)의 투자기간별 수수료·비용 예시의 경우 유사한 속성의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 받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 이면, 1 적용
 환급비율 < 0 이면, 0 적용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증권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2008.02.11 - 2009.02.10)	우리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전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2009.02.10)		
운용자산	9,291,778,301	0	0
증권	8,623,714,478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68,063,823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95,288,601	0	0
자산총계	9,687,066,902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36,832,647	0	0
부채총계	836,832,647	0	0
원본	15,733,926,525	0	0
수익조정금	956,466,783	0	0
이익잉여금	-7,840,159,053	0	0
자본총계	8,850,234,255	0	0

전체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08.02.11 - 2009.02.10)		
운용수익	-7,749,084,252	0	0
이자수익	39,276,712	0	0
배당수익	287,007,403	0	0
매매/평가차익(손)	-8,075,368,367	0	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91,074,801	0	0
당기순이익	-7,840,159,053	0	0
매매회전율	32.04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Class A1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기		
	(2009.02.10)		
운용자산	7,180,960,222	0	0
증권	7,180,960,222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7,161,977	0	0
자산총계	7,198,122,199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7,397,963	0	0
부채총계	47,397,963	0	0
원본	12,969,231,228	0	0
수익조정금	692,942,413	0	0
이익잉여금	-6,511,449,405	0	0
자본총계	7,150,724,236	0	0

Class A1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08.02.11 - 2009.02.10)		
운용수익	-6,376,346,086	0	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6,376,346,086	0	0
기타수익	5,314,368	0	0
운용비용	135,946,793	0	0
관련회사 보수	135,946,793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470,894	0	0
당기순이익	-6,511,449,405	0	0
매매회전율	0.00	0	0

Class C1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기			
	(2009.02.10)			
운용자산	1,437,683,399	0	0	
증권	1,437,683,399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035,483	0	0	
자산총계	1,439,718,882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589,697	0	0	
부채총계	11,589,697	0	0	
원본	2,622,671,289	0	0	
수익조정금	57,626,567	0	0	
이익잉여금	-1,252,168,671	0	0	
자본총계	1,428,129,185	0	0	

Class C1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08.02.11 - 2009.02.10)			
운용수익	-1,195,075,775	0	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195,075,775	0	0	
기타수익	1,025,871	0	0	
운용비용	56,782,976	0	0	
관련회사 보수	56,782,976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335,791	0	0	
당기순이익	-1,252,168,671	0	0	
매매회전율	0.00	0	0	

Class Ce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기			
	(2009.02.10)			
운용자산	231,590,634	0	0	
증권	231,590,634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21,588	0	0	
자산총계	231,812,222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617,623	0	0	
부채총계	1,617,623	0	0	
원본	420,727,592	0	0	
수익조정금	85,187,846	0	0	
이익잉여금	-275,720,839	0	0	
자본총계	230,194,599	0	0	

Class Ce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08.02.11 - 2009.02.10)			
운용수익	-268,652,225	0	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68,652,225	0	0	
기타수익	306,688	0	0	
운용비용	7,153,118	0	0	
관련회사 보수	7,153,118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22,184	0	0	
당기순이익	-275,720,839	0	0	
매매회전율	0.00	0	0	

나.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전체		제1기(2009.02.10)			
과목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68,063,823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668,063,823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팔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8,623,714,478	0	0
1. 지분증권		8,220,982,14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402,732,338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95,288,601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01,669,594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68,456			
4. 미수배당금		74,425,100			
5. 기타미수입금		3,822,551			
6. 기타자산		15,002,900			
7. 수익증권형약금					
자 산 총 계			9,687,066,902	0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836,832,647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7,143,765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9,419,048			
4. 수수료미지급금		575,460			
5. 기타미지급금		777,630,189			
6. 기타부채		2,064,185			
부 채 총 계			836,832,647	0	0
자 본					
1. 원 본		15,733,926,52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일여금		-6,883,692,270			
(발행좌수 당기: 15,733,926,525	좌				
전기: 0	좌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562.49	원				
전기: 0	원				
전전기: 0	원)				
자 본 총 계			8,850,234,255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687,066,902	0	0

대 차 대 조 표

Class A1

[단위:원]

과 목	제1기(2009.02.1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7,180,960,222		0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7,180,960,222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7,161,977		0		0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형약금						
자 산 총 계		7,198,122,199		0		0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47,397,963		0		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7,090,069					
4. 수수료미지급금	30,307,89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7,397,963		0		0
자 본						
1. 원 본	12,969,231,22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임여금	-5,818,506,992					
(발행좌수 당기: 12,969,231,228 좌 전기: 좌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551.36 원 전기: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7,150,724,236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198,122,199		0		0

대 차 대 조 표

Class C1

[단위:원]

과 목	제1기(2009.02.1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437,683,399			0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437,683,399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035,483		0		0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439,718,882		0		0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1,589,697		0		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021,631					
4. 수수료미지급금	9,568,066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1,589,697		0		0
자 본						
1. 원 본	2,622,671,28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1,194,542,104					
(발행좌수 당기: 2,622,671,289 좌 전기: 좌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544.53 원 전기: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1,428,129,185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439,718,882		0		0

대 차 대 조 표

Class Ce

[단위: 원]

과 목	제1기(2009.02.1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31,590,634		0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31,590,634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21,588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형약금						
자 산 총 계		231,812,222		0		0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617,623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20,235					
4. 수수료미지급금	1,397,388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617,623		0		0
자 본						
1. 원 본		420,727,592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190,532,993				
(발행좌수 당기: 420,727,592 좌						
전기: 좌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547.13 원						
전기: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230,194,599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1,812,222		0		0

다.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전체		[단위:원]				
과 목	제1기(2008.02.11-2009.02.1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26,284,115		0		0
1. 이 자 수 익	39,276,712					
2. 배당금수익	287,007,403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126,193,860		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131,323,06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4,968,155,049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6,715,74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3,201,562,227		0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11,813,295,26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1,373,114,018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50,043					
8. 기타거래손실	15,002,900					
운 용 비 용		91,074,801		0		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1,074,80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840,159,053		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498296407				

손 익 계 산 서						
Class A1		[단위:원]				
과 목	제1기(2008.02.11-2009.02.1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5,314,368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5,314,368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024,560,358		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024,560,35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9,400,906,444		0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9,400,906,444					
운 용 비 용		140,417,687		0		0
1. 운용수수료	61,465,293					
2. 판매수수료	70,142,881					
3. 수탁수수료	4,338,61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470,89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6,511,449,405		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502069035				

손 익 계 산 서

Class C1

[단위 : 원]

과 목	제1기(2008.02.11-2009.02.1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025,871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025,871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805,077,919		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805,077,91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000,153,694		0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000,153,694					
운 용 비 용		58,118,767		0		0
1. 운용수수료	16,758,543					
2. 판매수수료	38,841,602					
3. 수탁수수료	1,182,83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335,79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252,168,671		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477440187				

손 익 계 산 서

Class Ce

[단위 : 원]

과 목	제1기(2008.02.11-2009.02.1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06,688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06,688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06,373,597		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06,373,59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75,025,822		0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75,025,822					
운 용 비 용		7,375,302		0		0
1. 운용수수료	2,356,464					
2. 판매수수료	4,630,443					
3. 수탁수수료	166,21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22,18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75,720,839		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65534289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Class A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8.02.11 - 2009.02.10	0	0	173 <0>	175	43	38	129	7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주2) <>는 전년도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 내역입니다.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자는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Class 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8.02.11 - 2009.02.10	0	0	42 <0>	44	16	17	26	1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주2) <>는 전년도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 내역입니다.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자는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Class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8.02.11 - 2009.02.10	0	0	7 <0>	7	2	2	4	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주2) <>는 전년도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 내역입니다.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자는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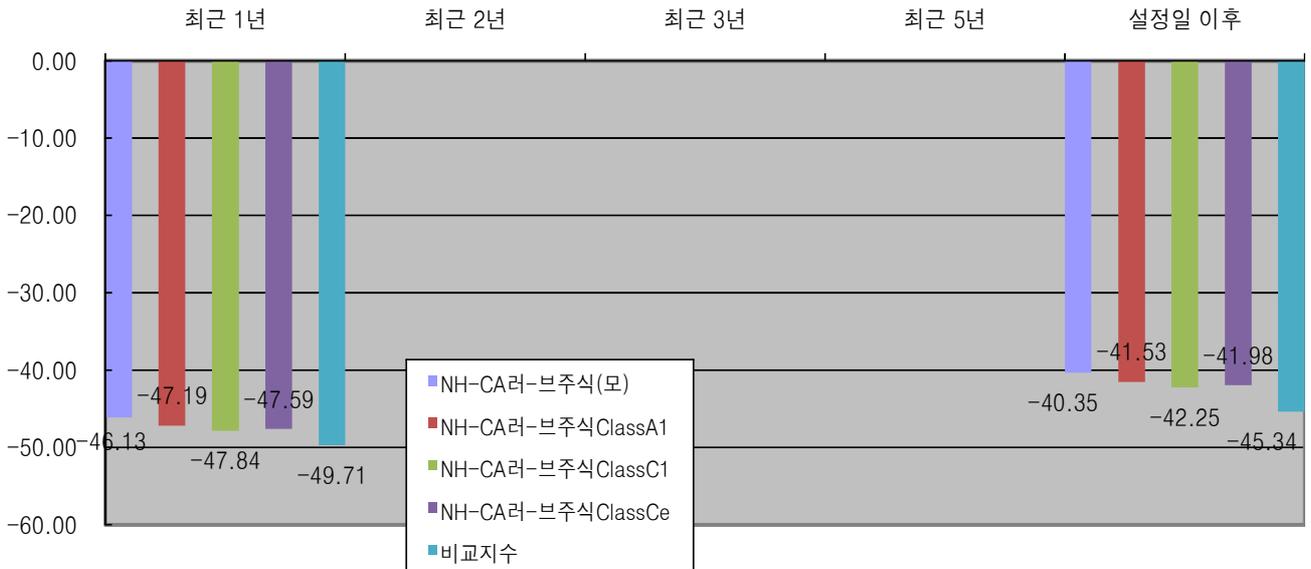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3.17 ~09.03.16				08.02.11 ~09.03.16
NH-CA러-브주식(모)	-46.13				-40.35
NH-CA러-브주식ClassA1	-47.19				-41.53
NH-CA러-브주식ClassC1	-47.84				-42.25
NH-CA러-브주식ClassCe	-47.59				-41.98
비교지수	-49.71				-45.34

- (주 1) 비교지수 : [MSCI RUSSIA 10/40 Index × 45%] + [MSCI BRAZIL index × 45%] + [Call rate × 10%]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8.03.17 ~09.03.16	08.02.11 ~08.03.16			
NH-CA러-브주식(모)	-46.13				
NH-CA러-브주식ClassA1	-47.19				
NH-CA러-브주식ClassC1	-47.84				
NH-CA러-브주식ClassCe	-47.59				
비교지수	-49.71				

(주 1) 비교지수 : [MSCI RUSSIA 10/40 Index × 45%] + [MSCI BRAZIL index × 45%] + [Call rate ×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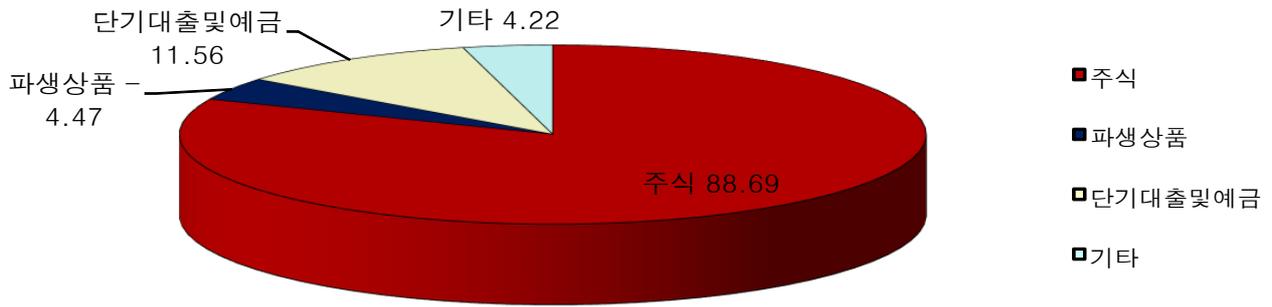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09.02.10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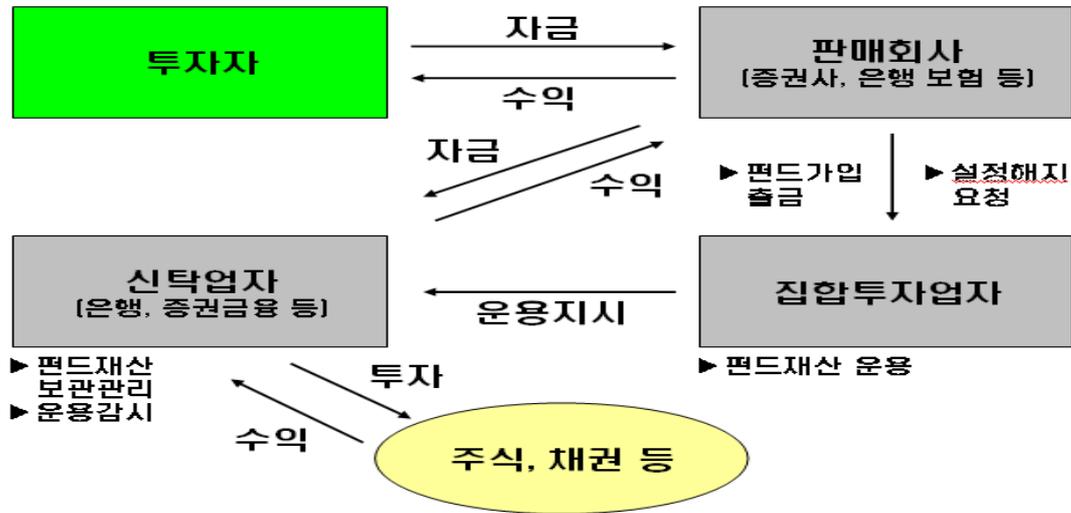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7	4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3.09)	(36.91)	(11.00)
BRL	20	0		0	0	0		0		0	0	21
	(98.8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0)	(0.00)	(22.00)
EUR	1	0		0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USD	61	0		0	0	-4		0		4	0	60
	(100.60)	(0.00)	(0.00)	(0.00)	(0.00)	-(6.87)	(0.00)	(0.00)	(0.00)	(6.27)	(0.00)	(65.00)
합계	82	0	0	0	0	-4	0	0	0	11	4	93
	(88.69)	(0.00)	(0.00)	(0.00)	(0.00)	-(4.47)	(0.00)	(0.00)	(0.00)	(11.56)	(4.22)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NH-CA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연락처 : 02-368-3600 (www.nh-ca.com)	
회사연혁	2002.4.5	농협과 CAAM 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3.1.28	법인설립 (자본금 300 억, 농협 60%, CAAM 40%)
	2003.3.28	금감위로부터 투신업 본허가 취득
	2003.4.9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3.8.7	자문업 등록(금융감독원)
	2003.10.29	투자일임업 등록
	2004.5.14	Asian Investor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운용사 선정
	2005.3.1	Asia Asset Management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신상품상 수상
	2006.9.26	국민연금 SRI 펀드 운용사로 선정
자본금	300 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2010년 1월 주요주주 CAAM의 사명이 Amundi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07.3말	'08.3말	항목	'07.3말	'08.3말
유동자산	36,045	40,676	영업수익	11,332	11,332

고정자산	2,011	3,686	영업비용	8,538	10,719
자산총계	38,056	44,362	영업이익	2,794	6,191
유동부채	1,236	2,848	영업외수익	12	499
고정부채	57	123	영업외비용	1	8
부채총계	1,293	2,971	경상이익	2,805	6,682
자본금	30,000	3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6,763	11,391	특별손실	-	34
자본조정	-	-	법인세	851	2,020
자본총계	38,056	41,391	당기순이익	1,954	4,628

라. 운용자산 규모

[2009.03.16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3,091	7,146	6,530	0	377	12,086	0	0	0	0	78,574	117,80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지역 투자에 오랜 경험과 Know-how 를 축적한 세계적인 운용사인 아문디(Amundi)을 해외자문회사로 하여 글로벌 리서치 및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해외자문회사 개요

회사명	아문디 (Amundi) 설립년도: 1950 년
주소 및 연락처	90, boulevard Pasteur, 75015 Paris, France Tel : + 33 (0)1 43 23 30 30
관련 업무	외화자산운용 관련 자문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HSBC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 가 25 02-2004-0123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외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의 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연락처	02-3215-14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0. 7. 1.
연혁 등	www.bond.co.kr	www.koreabp.com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 188 조제 2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배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용보고서

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인의 회계 를 받아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말일
- 2)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 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시행령 제 8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p>-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p> <p>[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p> <p>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p> <p>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p> <p>③ 마케팅 비용</p> <p>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p> <p>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p>
장내과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CA 러-브 증권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